

제19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 
( 제 2 차 본 회 의 )  
2013.7.25( 목 ) 10:00

# 조례안 심사 보고서

총무위원회

## 목 차

1	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-----	2
2	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——	5
3	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기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——	7
4	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-----	9

#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07. 02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3. 07. 02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07. 12

## 2. 제안이유

- 전국 3,48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「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」 공모사업에 북상면이 선정됨에 따라,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설치지역 및 기능을 정함(안 제4조, 제5조)
  - 주민자치회는 시범실시 선정지역인 북상면에 군수가 설치하고, 협의, 위탁 등 주민자치업무 수행
- 나. 위원의 정수, 자격을 정함(안 제6조, 제7조)
  - 위원은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
  - 자격은 해당 읍·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세대주 등
- 다.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
  - 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 선정, 여성위원 40퍼센트 이상

#### 라. 선정위원회 구성을 정함(안 제8조)

- 위원은 9명 이내(읍·면장 3, 이장협의회 3, 지역대표 등 추천 3명)

#### 마. 위원 임기와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6조, 제17조)

#### 바. 유효기간 및 경과조치 규정을 둠(안 부칙)

-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·운영은 북상면에 한정, 2014년 7월 31일까지 적용함
-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정관·재산 등을 승계함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제정 조례안은 '안정행정부'에서 전국 3,48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「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」 공모사업에 북상면이 선정됨에 따라, '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'에 근거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 하는 조례로서

- **안 제2조** 정의에서 '주민자치회'란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이며

- **안 제3조에서** '주민자치회'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, 주민의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진흥과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등의 운영원칙을 규정하였음

- **안 제6조에서** '주민자치회'는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'안 제7조'에서 위원의 자격은 해당 읍·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등으로 제한하였음.

- **안 제8조에서** 위원의 선정은 지역, 주민, 직등대표위원이 10명 이하의 위원을 추천하고 비율도 동일하게 구성토록 하였으며, 여성위원이 40%가 넘도록 하였으며,

- **안 제9조에서**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, 읍·면장 3명, 이장협의회 3명, 지역대표 연합단체 등에서 추천한 3명을 군수가 위촉토록 함.

- **안 제16조에서**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제17조에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.
  - **안 제19조에서** '주민자치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.
  - **안 부칙 제3조에서**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·재산 등을 승계하고, 군수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재 위촉토록 하였음.
- 본 제정 조례는 「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」 공모사업에 북상면이 선정됨에 따라,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#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07. 02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3. 07. 02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07. 12

## 2. 제안이유

- 「보건진료소 관리규정」폐지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활동장려금이 중단됨에 따라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설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함(안 제2조제3호, 별표 3)
  - 월 25만원(활동장려금 20만원 + 의료업무수당 5만원)
- 나. 지급대상이 없는 장려수당 일부를 삭제함(안 제3조, 별표 4)
  -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
- 다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함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기금에서 지급해 오던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활동장려금이 「보건진료소 관리규정」 폐지로 활동장려금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설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
- 그 주요내용을 보면
  -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은 5명이 증가되고 기능직의 경우 2명이 감소되는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
-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 
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07. 02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3. 07. 02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07. 12

## 2. 제안이유

-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항목을 삭제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지원 관련 포괄적인 내용을 삭제함(안 제3조제2항제4호)
  - 그 밖에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한국승강기대학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항목을 삭제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조례로서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#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07. 02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3. 07. 02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07. 12

## 2. 제안이유

- 체육시설 감면대상에 영유아 대상 행사와 수영장 사용 여성회원 중 '가임여성'의 경우를 신설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어린이와 영유아에 대한 정의를 변경함(안 제2조6호)
  - 어린이 : 하한 연령 7세 이상 ⇒ 6세 이상
  - 영유아 규정 신설 : 6세 미만의 취학 전의 사람
- 나.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함(안 제15조제2항 · 제4항)
  - 사용료 30% 경감 : 영유아 대상 행사 추가
  - 수영장 이용 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여성회원에게 대하여 월 이용료의 10퍼센트 감면 규정 신설

#### **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**

- 이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 감면대상에 영유아 대상 행사와 수영장 사용 여성 회원 중 가임여성의 경우를 신설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# **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#### **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**

#### **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**

#### **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#### **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**

#### **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**